

V. 급여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요금표의 이용요금 중 15%가 이용자 본인의 부담액이 됩니다. 귀하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요금표】

(단위 : 원/회당)

구 분	수 가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10,680	16,120	21,360	26,700	30,200	33,500	36,600	39,500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				차량 미이용시			
	71,290				39,590			
본인부담금	이 금액의 15% (의료수급자 등 경감대상자는 7.5%)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면제							

가 산 금	...야간(오후6시~10시)의 가산	상기 요금에 대하여 1회에 20% 가산
	...심야(오후10시~오전6시)의 가산	상기 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 가산
	...일요일 · 공휴일 가산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사업자가 따로 설정하며 전액이 이용자 본인 부담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체납 등에 의해 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이용자는 1개월에 대해 요금표의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용료의 지불을 할 경우에 급여 제공 증명서와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방문 요양요원 2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2인분의 요금이 됩니다.

VI. 이용 절차 안내

(1) 서비스의 이용 개시

우선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이용자 본인과 가족이 함께 방문하셔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 듣고 활동모습을 견학하신 후 서비스 제공 의뢰를 받은 후 계약을 맺어 방문요양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주 · 야간보호 등 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기관 서비스관리자와 상담해 주세요.

(2) 서비스의 종료

- ①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서비스의 종료를 희망하는 날짜의 1주일 전까지 문서에 의해 신청해 주세요.
- ② 당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인원 부족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는 종로의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 하겠습니다.
- ③ 자동종료 :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했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 구분이 비 해당(자립)이라고 인정 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의 문서통보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